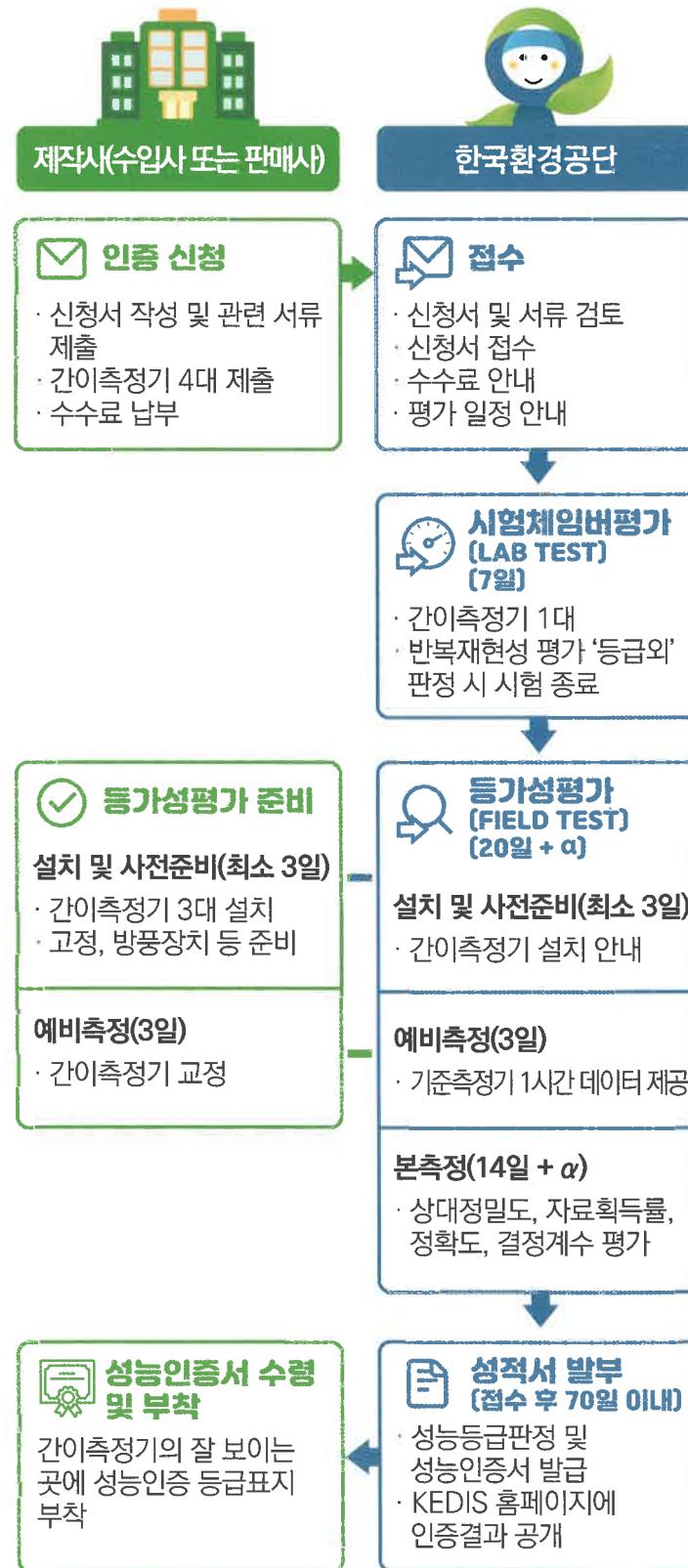


## 미세먼지 성능인증 신청방법



## 수수료 및 시험장소

### 수수료

#### 성능인증

| 수수료(원)          | 비고   |
|-----------------|--|
| 4,271,000원      | 반복재현성 항목: 822,000원<br>상대정밀도, 자료획득률, 정확도, 결정계수 항목: 3,449,000원 |
| *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 |  |

#### 성능점검

| 수수료(원)   |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|
| 현장 성능점검  | 반입 성능점검  |
| 484,000원 | 419,000원 |

- \*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
- \*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점검 수수료 가이드라인에 따름
- \* 성능점검은 현장 성능점검 또는 반입 성능점검으로 실시

### 성능인증·점검 시험장소



#### 문의처(한국환경공단 측정기검사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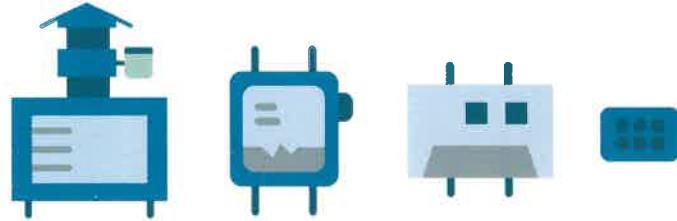
주 소 :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기후대기관 원편  
(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시설)  
문의 전화 : 032)590-4648, 4663, 4641

#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·점검제도 소개

PM-2.5  
**16**



## ○ 미세먼지 간이측정기



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4조에서 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제작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초미세먼지(PM-2.5) 측정기기

※ 공기청정기, 냉난방기 등 전기전자제품의 부속품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

## ○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도

### • 성능인증 목적

국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사용에 있어 검증되지 않아 신뢰성이 낮은 자료가 무분별하게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고, 사용자가 성능 인증 등급에 따라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

\*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제작·수입 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제품 인증

### • 성능인증 기준

| 등급<br>분류 | 시험체임버<br>평가(실내) |        | 등가성<br>평가(실외) |        |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|
|          | 반복재현성           | 상대정밀도  | 자료획득률         | 정확도    | 결정계수    |
| 1등급      | 80% 초과          | 80% 초과 | 80% 초과        | 80% 초과 | 0.8% 초과 |
| 등급외      | 80% 이하          | 80% 이하 | 80% 이하        | 80% 이하 | 0.8% 이하 |

\* 반복재현성 평가 결과 등급 외 판정 시 등가성평가 미진행 및 시험 종료

\* 평가항목 중 하나라도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경우 성능인증 등급은 등급 외 판정

## ○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점검제도

### • 성능점검 목적

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측정의 결과를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자가 2년 6개월마다 성능인증기관에게 성능점검을 받아 정확한 미세먼지 정보가 생산되도록 하기 위함

### • 성능점검 기준

| 판정구분 | 반복재현성  | 정확도    |
|------|--------|--------|
| 적합   | 80% 초과 | 80% 초과 |
| 부적합  | 80% 이하 | 80% 이하 |

\* 평가항목 중 하나라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성능점검 적합여부는 부적합 판정

### • 성능점검 신청방법



## ○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관련 법적근거

### • 법적근거

#### |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

- 제24조(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)
- 제25조(성능인증의 취소 등) · 제27조(수수료) · 제31조(과태료)

#### |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
- 제17조(과태료)

#### |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

- 제16조(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등)
- 제16조의2(성능인증의 유효기간) · 제16조의3(성능검사 등)
- 제17조(성능인증기관의 지정 등) · 제18조(측정 결과의 공개방법)
- 제18조의2(미세먼지측정결과를공개하는자의측정기기성능점검등)
- 제18조의3(측정기기의 사용정지 및 재점검)
- 제19조(성능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세부기준)
- 제20조(수수료)

#### |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

#### |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점검 수수료 가이드라인

[제정 2023.6.14.]

### • 2023년 개정된 시행규칙

| 구분   | 주요내용  | 비고               |
|------|---|------------------|
| 유효기간 | 성능인증 유효기간 5년으로 설정   | 제16조의2           |
| 성능점검 | 성능점검 기준·주기·방법 등 신설<br>· 대상: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측정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측정기기<br>· 주기: 최초 성능점검 후 2년 6개월마다<br>· 방법: 반입성능점검 또는 현장성능점검<br>※ 세부방법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로 제정 | 제18조의2<br>별표 1의2 |
| 성능검사 | 인증제품의 품질저하 또는 성능점검 결과 부적합한 제품.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성능검사 실시   | 제16조의3<br>별표 1   |